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66
----------	-------

발의연월일 : 2026. 4. 13.

발 의 자 : 강경숙·김재원·신장식
박은정·서왕진·황운하
김선민·정춘생·김준형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사교육 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나.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거나 그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다.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 라. 학원이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강사로 채용하거나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호의2 신설).
- 마. 학원설립·운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호의2에”를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로 한다.

6의3.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6호의3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경우

9의2. 임원 또는 강사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 12.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학원의 임원 또는 강사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학원설립·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때
출금액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
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
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
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